

순천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1998. 2. 7.

개정 2005. 7. 12.

개정 2006. 7. 4.

개정 2009. 11. 6.

개정 2019. 11. 19.

개정 2020. 6. 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7조와 학술교류협력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교(이하 “협력 대학교”라 한다)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이 대학교와 협력대학교간의 학부과정 학생의 교류에 적용한다. 다만,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국·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간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11. 6)

제3조(인원) 정규학기 중 대학간 상호 교류학생 수는 이 대학교 학부(과) 정원의 2분의 1 이 내로 하고, 계절학기 교류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4조(교류학기) 교류학기는 정규학과 계절학기 모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대상교과목 범위) 교류학생의 이수대상 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교양 교과목은 이수대상 교과목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교류학점) 교류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장 이 대학교 학생에 관한 사항

제7조(자격) 협력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은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계절학기 지원자에게는 1호, 2호,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이 대학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자
2. 전학년 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 (개정 2006. 7. 4.)
3. 협력대학교 교류 승인을 받은 자
4.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5. 국외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6. 국외대학 파견 학생은 파견 종료 후 1학기 이상 이 대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

제8조(신청 및 허가) ① 지원자는 이 대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 전공의 교과목에 대하여

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원자는 협력대학교 학기개시 2개월 전까지 학생교류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3조의 범위내에서 교류학생을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
④ 삭제<2005.7.12.>

⑤ 국외대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허가에 앞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⑥ 교류학생 명단은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협력대학교에 통보한다.

제9조(취소) ① 지원자는 수업주수 4분의 1이내에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학생교류허가취소신청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취소허가를 받은 자는 복학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이 대학교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강) ① 재학기간 중 협력대학교에서의 수강은 정규학기는 총4개학기까지로 하고, 계절학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(개정 2006. 7. 4.)

② 지원자는 협력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(삭제 2006. 7. 4.)

④(삭제 2006. 7. 4.).

제11조(취득학점) 학기당 취득학점은 정규학기는 19학점,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12조(학점인정) ① 협력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이 대학교의 관련규정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이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동일교과목에 대하여는 협력대학교에서 재이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국내 협력대학교 지원자에 대한 학점 인정은 협력대학교로부터 통보된 성적과 당초 교류 허가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인정한다.

④ 국외 협력대학교 지원자는 교류기간 만료 후 교류학점인정신청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학과에서는 교류학점 인정 여부를 심의한 후 동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협력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

2. 제1호에 의한 인정 학점은 교과목 당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장 협력대학교 학생에 관한 사항

제13조(자격) 이 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대학교 학생의 자격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14조(절차) ① 교류학생 소속대학교 총장은 교류학생 명단을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이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이 대학교에 지원한 교류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 승인하고 그 명단을 학기개시 2주전까지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다.

제15조(수강) ① 교류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<삭제>

제16조(취소) 교류허가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허가를 받아 취소하고 이 대학교에서 한 수강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성적) 교류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학점수와 함께 매 학기말 소속대학교에 통보한다.

제18조(학칙준수) 이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교류기간 중 이 대학교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신분증) 정규학기를 지원한 교류학생에게는 이 대학교에서 교류학생증을 발급한다.

제4장 재정 및 시설물 사용 등

제20조(등록금) ① 교류학생으로 정규학기 지원자는 소속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계절학기 지원자는 협력대학교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이미 납부된 계절학기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학기 개시 전이거나 입영.본인의 사망.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“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”을 준용하여 반환한다.

제21조(재정) 학생교류와 관련한 필요재원은 교류참여 대학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제22조(시설물 이용) 협력대학교 학생을 위하여 도서관, 후생복지시설 등의 이용자격을 부여한다.

부 칙(1997. 2. 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타대학이수학점인정규정은 폐지하고, 폐지된 규정에 의하여 국외대학교에 교류된 이 대학교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교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5. 7. 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 7. 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2009. 11. 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19. 11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6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학생 교류 허가 신청서

1. 인적 사항									
소속	대학	학과	학년	복수전공	전화	()	-		
학번	성명	적용교육과정		전 학년 성적					
					직전학기 성적				
2. 교류 사항									
협력대학교	대학교			타 대학 학점 이수 내역	국내대학	학점			
교류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교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교류			외국대학	학점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학기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절학기			계	학점			
교류 기간	년	월	일	~	년	월	일		
3. 수강 예정 과목									
협력(교류)대학교				우리대학교 인정(신청)과목					
이 수 구 분	교 과 목 명	학점 (시간)	교과목 개설학과	이 수 구 분	교과목 코 드	인정 신청 과목명	학 점 (시간)	학과 확인	
								학과(전공)	담당교수 확인
소계	20 - 학기								
소계	20 - 학기								
합 계									

위와 같이 학생교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인)

위 수강예정과목은 관련 규정과 해당 교육과정에 의하여 심의한 바,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교류허가를 신청합니다.

○○○ 학부(과)장

(인)

순천대학교총장 귀하

붙임 : 성적증명서 1부.
(별지 제2호 서식)

학생 교류허가 취소 신청서

1. 인적사항

소속 학부(과)		학번		성명	(인)
----------	--	----	--	----	-----

2. 교류허가 사항

협력대학교	대학교					
교류구분	정규학기()		계절학기()			
교류기간	년	월	일 ~	년	월	일

3. 취소 사유

위와 같이 학생 교류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(인)
0 0 학부(과)장 (인)

순천대학교총장 귀하

(별지 제3호 서식)

수강신청 변경 신청서

1. 인적사항

소속 학부(과)		학번		성명	(인)
적용교육과정		이수기간	~		

2. 수강신청 변경 내용

협력대학 신청과목			우리대학 인정과목		
이수구분	교 과 목 명	학점(시간)	이수구분	학점(시간)	담당교수 확인
소 계	20 - 학기				
소 계	20 - 학기				
합 계					

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변경코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(인)

0 0 학부(과)장 (인)

순천대학교총장 귀하

교류학점 인정신청서

1. 인적사항											
소속	대학	학과 학년	복수전공		전화	() -					
학번	성명	적용교육과정			전학년 성적						
						직전학기 성적					
2. 교류사항											
협력대학교	대학교				타 대학 학점 이수 내역 (직전학기 까지)	국내대학	학점				
교류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교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교류			외국대학	학점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학기	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절학기			계	학점				
교류 기간	년 월 일 ~		년 월 일								
3. 학점 인정 내역											
협력(교류)대학교				우리대학교 인정(신청)내역							
이수구분	교과목명	학점(시간)	성적	이수구분	교과목코드	인정교과목명	학점(시간)	성적	학과 확인		
									학과(전공)	담당교수(확인)	
소계	20 - 학기										
소계	20 - 학기										
합계											

위 학생의 협력대학교 이수학점을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 학부(과)장

(인)

순천대학교총장 귀하

붙임 : 협력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.